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㈜ 한국씨티은행

문의가능 전화번호 : (02) 3455-2504 / 3455-2567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미래에셋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 (주식)
(종류 A, 종류 C-1, C-2, C-3, C-4, 종류 C-e, 종류 F)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, 신탁형, 공모형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
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2.15 - 2013.02.14

라. 집합투자업자: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자산운용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HMC투자증권, HSBC은행, IBK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- 2012.03.26 규약 변경

1) 집합투자업자명 변경

미래에셋캡스자산운용(주) ---->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2) 집합투자기구명 변경

미래에셋캡스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 (주식)
----> 미래에셋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 (주식)

- 2012.06.29 규약 변경

1) 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: 수익증권 종류 F 신설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운용경력 및 기간	협회등록번호
2012.03.26	말소	김철민	-전북대 경영학 -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부문 팀장	2101004784
2012.03.26	신규	윤주영	-고려대 산업공학과 -현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역	2109000631
2012.08.27	말소	윤주영	-고려대 산업공학과 -현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역	2109000631
2012.08.27	신규	김철민	-전북대 경영학 -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부문 팀장	2101004784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.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.

6. 회계감사인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선임일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(원)	계약방법
2004.09.10	성도회계법인	1년	1,650,000	서면

* 회계감사인선임 비용은 1년에 한번 회계감사 수행을 위해 합투자기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임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합니다.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하게 작성 되었습니다.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본 집합투자기구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.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.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.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 사항 없음.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 제1호 (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감시의무 면제)에 해당되어 본 항목은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에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(mapsinvestments.miraesasset.com) 및 금융투자협회 (www.kofia.or.kr)의 홈페이지를 이용 할 경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자산 결제 및 보관을 위하여 씨티은행 홍콩(Citibank N.A. Hong Kong Branch)을 해외보관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보관 대리인은 동 업무를 각국의 보관 대리인에게 재위임 할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A, 종류 C1, C2, 종류 C-e는 2013.01.27일 소규모펀드 1개월 여부를 공시하였으며,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해지 될 수 있습니다.